

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56호

2025년도 2차 해수면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4일

해양경찰청장

2025년도 제2차 해수면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

1. 사업 목적

-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,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·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(총사업비의 80% 이내)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.5%p를 지원

※ 지원 근거 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, 행정안전부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(25.2.27.)

※ 총사업비는 「법인세법」 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

2. 신청 기간 : 2025년 4월 24일(목) ~ 5월 8일(목) 18:00까지

3. 신청 자격[해양경찰서에서 면허(신고)를 받은 선박에 한정]

-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

※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
-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· 사업장 폐쇄 대상이 되는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자

※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2026. 12. 31.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

4.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

○ 신청대상

-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유선·도선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(총톤수 대비 150%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%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,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.)
-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. 2. 3. 이후 대체 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(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)

○ 대출 가용액 : '25년도 해수면 유·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※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(후보자)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대출 취급 금융기관 : 5개 협약은행

취급 금융기관	대출 기간	대출 금리	대출 한도
산업, 기업, 부산, 수협, 신한은행	15년 이내 [거치기간 5년 이내, 거치 후 연 4회 균등상환, 이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(후취)]	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, CD, Koribor, 은행채 금리 등 + 가산 금리	총사업비의 80% 이내

5.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

○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.5%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

6.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

-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※ 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,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(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)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변경 면허(신고)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·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.
-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·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7.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
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-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,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(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)
※ 8개월 이내 '대출 취급 금융기관'의 이차보전상품으로 대출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대상자 포함
-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변경 면허(신고)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·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
- 해양경찰청장(또는 행정안전부장관)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
8.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

-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, 양도,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

-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(신고)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·도선 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
-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9조에 따라 면허(신고)가 취소된 경우
-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장(또는 행정안전부장관)의 지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유·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9. 신청 방법

-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: 신청서 서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(www.kcg.go.kr, 새소식/알림 → 고시공고)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
- 접수처 : 유·도선안전협회
 - 주소 : (우 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(SR파크원 801호)
 - 전화 : 044) 865-8613
- 신청서 제출 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 - ※ 다만,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, 전자우편(e-mail)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10. 제출 서류

- 신청 서식(1~5번) 및 기초 증빙자료(6~9번) ※ 총 9종, 필수제출
 - (1) (서식1)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.
 - (2) (서식2) 유·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.(※ 계획 충실성 평가반영)
 - (3) (서식3)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(전, 후, 좌, 우) 1부.
 - (4) (서식4) 대체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.
 - (5) (서식5)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·해체 확약서 1부.

- (6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
 - (7) 유·도선사업 면허증(또는 신고확인증) 사본 1부.
 - (8)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.
 - (9)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.
- 심사항목 배점 평가용 증빙자료 ※ 총 6종, 선택제출
- (1)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*(KIS신용평가모형 반영 시 미제출, 평점 적용)
 - * 기업용 '신용평가등급 확인서'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본점수(최저)로 배점하여 심사
 - (2) 협약은행의 '대출거래약정서'(건조자금 대출 완료한 경우, 가산점 적용)
 - (3) 조선소 건조계약서(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)
 - (4)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*(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)
 - * 은행 발급, 대출금 거래상황, 차입 일자, 건조 단계별 대출잔액 등 포함(건조율 확인 용)
 - (5) 영세사업자 증빙서류(자본금 1억원 이하, 매출액 8천만원 이하, 가산점 적용)

- ① (개인·법인 사업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)
 - 발급처 : 정부24, 홈텍스, 행정복지센터, 구청,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 등
 - ※ 과세기간 1년치 : '23. 1. 1.~12. 31. 기준(발급 불가시 '22. 1. 1.~12. 31. 대체발급)
 - ② (법인 사업자)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)
 - 발급처 : 법원 등기소(인터넷 등기소), 무인민원발급기 등
 - (6)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(예비인증서 포함, 가산점 적용)

11. 지원대상자(후보자) 선정 절차

- 선정 : 유·도선 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·선정 절차 진행
 - ※ 심사위원회 구성 : 5명(해경청, 선박안전·조선·금융기관 등 참여)
- 선정 결과 발표 : 2025년 6월 이후 업체 개별통보(유·도선 안전협회 경유)

12. 기타사항

-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.
-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.
-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, 누락,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체의 책임임.
- 문의처 : ①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(☎032-835-2549)
② 유·도선안전협회(☎044-865-8613)

■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	
신청인	상호(명칭)	성명(대표자)			
	생년월일	전화번호			
	주소				
	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			
해체 및 매각대상 선박의 명세	선명 및 업종	총 톤수	선질	승선 정원 승객 명, 선원 명	
	적재 중량(용량)	진수 연월일	선령(공고일 기준)	기타사항	
건조 계획 선박의 명세	선명 및 업종	총 톤수	선질	승선 정원 승객 명, 선원 명	
	친환경기술 적용 유무: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지와 같음				
건조자금 조달계획	총 사업비	만원	대출신청 금액 (총사업비의 80% 이내)	만원	
	건조자금	연도별 자금조달 계획			
		20년 월	20년 월	20년 월	자기자금 조달방법
		만원	만원	만원	
		만원	만원	만원	
		만원	만원	만원	

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·도선안전협회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처리 절차				
	신청서 작성 제출	접 수	심사 (평가)	사업후보자 추천	사업자 및 대출 가용액 결정
업체	유·도선 안전협회	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	유·도선 안전협회	금융기관	금융기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유·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

1. 사업의 개요

2. 자산 및 부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자 산			부 채		
항 목	금 액	비 고	항 목	금 액	비 고

3. 기존 사업 현황

사업 종류 (유선/도선)	선 박 명	영업 구역	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	
			승객(명)	운항 횟수

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

4. 자금 조달 계획

(단위: G/T, 척, 만원)

선명(업종)	건조 톤수	건조 척수 (①)	건조 가격 (②)	총 투자액 (①×②)	자기 자금	융자 신청 금액
계						

※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(건조금액)의 80% 이내,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- 자기 자금 조달방안

5. 건조 선박의 제원

- 주요 제원
 - 선질, 장, 폭, 심, G/T(총톤수), DWT(중량톤), 탑승 인원(승객정원) 등
-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
 - 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6. 선박 건조 공정계획(예상)

선박 건조 공정	일정
○ 계약체결 (10%)	
○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(20%)	
○ 강재조립 개시 (40%)	
○ 강재조립 25% 조립 완료 (50%)	
○ 강재조립 50% 조립 완료 (60%)	
○ 강재조립 75% 조립 완료 (70%)	
○ 진수 (80%)	
○ 인도 (100%)	

※ 일정은 년, 월 기재

7.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

- 담보물의 종류
- 담보가액 : 원

○ 담보 내역(해당하는 경우 기재)

구분	담보 재산명	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	담보재산의 규모(m^2)	담보재산의 예상 가액	기 담보설정액
1					
2					
3					

※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(내역)만 기재

8. 영업 계획

(단위: 명, 톤)

사업 종류 (유선/도선)	선명/톤수	영업 구역	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	
			승객(명)	운항 횟수

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9. 기대효과

○ 고용증대(고용 창출) 효과

○ 기타사항

(서식 3)

노후 선박 보유 현황

1. 선 박 명 :

2. 업 체 명 :

(전면 사진)	(후면 사진)
(좌측 사진)	(우측 사진)

※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.

대체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투입 확약서

당사는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(도선)사업 면허(신고확인)를 한 자로서 「2025년도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[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56호(2025. 4.24.)]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·도선 사업에 투입(선박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)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,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5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유·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

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·해체 확약서

당사는 「2025년도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[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56호(2025. 4.24.)]」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‘기존 선박 노후도(30점)’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호를 제시하며,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(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) 할 것과 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,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5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유·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

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심사기준

심사항목		배점	세부 지표 및 심사등급				평점															
기업 건실도 (25)	■ 기업 신용 평가 등급	25점	● 신용평가 등급 표에 따른 평가(증빙서류 첨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신용평가구간 1~2</td><td>신용평가구간 3~4</td><td>신용평가구간 5~6</td><td>신용평가구간 7이하</td></tr> <tr> <td>25</td><td>20</td><td>15</td><td>10</td></tr> </table>				신용평가구간 1~2	신용평가구간 3~4	신용평가구간 5~6	신용평가구간 7이하	25	20	15	10								
신용평가구간 1~2	신용평가구간 3~4	신용평가구간 5~6	신용평가구간 7이하																			
25	20	15	10																			
유·도선사업 기여도 (25)	■ 사업영위 기간	5점	10년 이상 5	10년 미만 ~7년 이상 4	7년 미만 ~4년 이상 3	4년 미만 2																
	■ 신규건조 추진도	10점	● 신청 선박 신규건조 추진 현황(증빙서류 첨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건조 중(50%이상) ~건조완료</td><td>건조 중(50%미만)</td><td>계약체결</td><td>계획 중</td></tr> <tr> <td>10</td><td>7</td><td>4</td><td>1</td></tr> </table>				건조 중(50%이상) ~건조완료	건조 중(50%미만)	계약체결	계획 중	10	7	4	1								
건조 중(50%이상) ~건조완료	건조 중(50%미만)	계약체결	계획 중																			
10	7	4	1																			
■ 보유 선박	5점	● 내수면 선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0톤 이상 5</td><td>20톤 미만~3톤 이상 3</td><td>5톤 미만 1</td><td></td></tr> </table> ● 해수면 선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100톤 이상 50톤~70톤 이상</td><td>100톤 미만 50톤~30톤 이상</td><td>70톤 미만 30톤~20톤 이상</td><td>50톤 미만 20톤~10톤 이상</td><td>30톤 미만 10톤 미만</td></tr> <tr> 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 </table>				20톤 이상 5	20톤 미만~3톤 이상 3	5톤 미만 1		100톤 이상 50톤~70톤 이상	100톤 미만 50톤~30톤 이상	70톤 미만 30톤~20톤 이상	50톤 미만 20톤~10톤 이상	30톤 미만 10톤 미만	5	4	3	2	1			
20톤 이상 5	20톤 미만~3톤 이상 3	5톤 미만 1																				
100톤 이상 50톤~70톤 이상	100톤 미만 50톤~30톤 이상	70톤 미만 30톤~20톤 이상	50톤 미만 20톤~10톤 이상	30톤 미만 10톤 미만																		
5	4	3	2	1																		
■ 연관산업 기여도	5점	● 최근 10년간 건조 실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3척 이상 5</td><td>2척 4</td><td>1척 3</td><td>0척 2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		3척 이상 5	2척 4	1척 3	0척 2													
3척 이상 5	2척 4	1척 3	0척 2																			
유·도선 노후도 (30)	■ 기존 선박 노후도	30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FRP선 목선</td><td>25년 이상 30</td><td>25년 미만~ 20년 이상 20</td><td>20년 미만~ 15년 이상 10</td><td>15년 미만 5</td>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강선 알루미늄선</td><td>30년 이상 30</td><td>30년 미만~ 25년 이상 20</td><td>25년 미만~ 20년 이상 10</td><td>20년 미만 5</td></tr> </table>				FRP선 목선	25년 이상 30	25년 미만~ 20년 이상 20	20년 미만~ 15년 이상 10	15년 미만 5	강선 알루미늄선	30년 이상 30	30년 미만~ 25년 이상 20	25년 미만~ 20년 이상 10	20년 미만 5						
FRP선 목선	25년 이상 30	25년 미만~ 20년 이상 20	20년 미만~ 15년 이상 10	15년 미만 5																		
강선 알루미늄선	30년 이상 30	30년 미만~ 25년 이상 20	25년 미만~ 20년 이상 10	20년 미만 5																		
성장 잠재력 (20)	■ 사업계획 충실향	20점	탁월 20	우수 18	보통 16	미흡 14																
가·감점	■ 가·감점 (심사위원회 평가)	최대 25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가점</td> <td>● 융자실행자(5점)</td> </tr> <tr> <td>● 도선 대체 건조(3점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감점</td> <td>● 영세사업자(5점), 자본금 1억원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, 증빙서류 첨부)</td> </tr> <tr> <td>● 안전 관리 우수업체(3점),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가점</td> <td>● 환경 친화적 선박 건조(5점, 증빙서류 첨부) ※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선박으로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인증서(예비인증서포함)를 발급받은 선박</td> </tr> <tr> <td>● 유·도선 안전 협회 가입(2점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감점</td> <td>● 유·도선 정보시스템 참여도(2점)</td> </tr> <tr> <td>●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조선소 미계약(5점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가점</td> <td>● 금융기관 융자 미실행(3점) ※ 대출금의 5%를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면으로 제출할 경우 감점대상 제외</td> </tr> <tr> <td>● 별 칙처분(2점), 행정처분(1점), 과태료부과(1점)</td> </tr> </table>				가점	● 융자실행자(5점)	● 도선 대체 건조(3점)	감점	● 영세사업자(5점), 자본금 1억원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, 증빙서류 첨부)	● 안전 관리 우수업체(3점),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)	가점	● 환경 친화적 선박 건조(5점, 증빙서류 첨부) ※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선박으로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인증서(예비인증서포함)를 발급받은 선박	● 유·도선 안전 협회 가입(2점)	감점	● 유·도선 정보시스템 참여도(2점)	●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조선소 미계약(5점)	가점	● 금융기관 융자 미실행(3점) ※ 대출금의 5%를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면으로 제출할 경우 감점대상 제외	● 별 칙처분(2점), 행정처분(1점), 과태료부과(1점)	
가점	● 융자실행자(5점)																					
	● 도선 대체 건조(3점)																					
감점	● 영세사업자(5점), 자본금 1억원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, 증빙서류 첨부)																					
	● 안전 관리 우수업체(3점),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)																					
가점	● 환경 친화적 선박 건조(5점, 증빙서류 첨부) ※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선박으로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인증서(예비인증서포함)를 발급받은 선박																					
	● 유·도선 안전 협회 가입(2점)																					
감점	● 유·도선 정보시스템 참여도(2점)																					
	●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조선소 미계약(5점)																					
가점	● 금융기관 융자 미실행(3점) ※ 대출금의 5%를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면으로 제출할 경우 감점대상 제외																					
	● 별 칙처분(2점), 행정처분(1점), 과태료부과(1점)																					
총 점		125점																				

* 총점이 같을 경우 유도선 노후도, 유도선사업 기여도, 기업 건실도, 성장 잠재력, 가점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

* 신규업체(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 업체)는 유·도선 사업 기여도를 기업 건실도로 대체

*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탈락

* 기업 신용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은 심사항목 배점의 최저점수를 반영

평가 일자 :

평가위원 :

(서명)